

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·운용 조례

제정	2005. 10. 27	조례 제 779호
개정	2007. 2. 23	조례 제 864호
	2007. 7. 1	조례 제 884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
일부개정	2012. 12. 11	조례 제1264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3. 5. 7	조례 제1291호
일부개정	2014. 5. 2	조례 제1372호
일부개정	2017. 9. 29	조례 제1709호
일부개정	2017. 10. 2	조례 제171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8. 12. 14	조례 제1887호
일부개정	2020. 11. 9	조례 제2079호(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)
일부개정	2023. 11. 6	조례 제245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촌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후계농업인을 영속적으로 발굴하여 농업인 조직체를 활성화시키고, 선진영농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7. 2. 23, 2014. 5. 2, 2017. 9. 29>

1. “농업인조직체”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용인시 농촌지도자회, 용인시 농업경영인회, 용인시 여성농업인회, 용인시 생활개선회, 용인시 품목별연구회, 용인시 4-H연맹, 용인시 4-H회 등을 말한다.
2. “전문농업인”이란 농업인으로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경영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.

[제목개정 2018. 12. 14]

제3조(기금의 조성)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농촌, 농업인조직체와 전문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조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9. 29>

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23. 11. 6>

[본조신설 2018. 12. 14]

제4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7. 9. 29, 2018. 12. 14>

1.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9. 29, 2018. 12. 14>

1.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촌 및 농업인조직체 육성사업
2.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지원사업
3. 후계세대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
4. 용인시 4-H회의 육성·지원사업
5. 그 밖에 농업발전을 위하여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

제6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삭제 <2018. 12. 14>

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·관리하되 여유자금은 「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며,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, 2017. 9. 29, 2018. 12. 14, 2020. 11. 9>

③ 매년도 운용기금은 적립금의 운용에 따른 전년도 수익금으로 한다. <개정 2017. 9. 29>

제7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,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, 2017. 9. 29>

1.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

2.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

3. 삭제 <2017. 9. 29>

4. 삭제 <2017. 9. 29>

② 삭제 <2018. 12. 14>

제7조의2(기금의 지원대상 및 선정) 기금의 지원대상 및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 12. 14]

제8조(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7. 9. 29>

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4. 5. 2, 2018. 12. 14>

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. <개정 2007. 2. 23, 2017. 9. 29, 2017. 10. 2, 2018. 12. 14>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<개정 2007. 7. 1, 2014. 5. 2, 2017. 9. 29, 2018. 12. 14, 2023. 11. 6>

1. 시 본청 농업행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

2.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 및 농업인 육성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농업기술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.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가.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용인시의회 의원

나. 용인시 농촌지도자회장

다. 용인시 농업경영인회장

라. 용인시 여성농업인회장

마. 용인시 생활개선회장

바. 용인시 4-H연맹회장

사.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
아. 그 밖에 품목별전문가 중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

4. 부터 9. 까지 삭제 <2018. 12. 14>

[제목개정 2018. 12. 14]

제9조(위원의 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
다. <개정 2018. 12. 14>

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
2014. 5. 2, 2017. 9. 29, 2018. 12. 14, 2023. 11. 6>

[제목개정 2018. 12. 14]

제10조 삭제 <2018. 12. 14>

제11조 삭제 <2018. 12. 14>

제11조의2 삭제 <2018. 12. 14>

제12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
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17. 9. 29>

1.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
1의2.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
2. 기금의 지원범위, 지원대상자 선정, 지원액 결정, 지원의 중지 등에 관
한 사항

3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
4. 기금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
에 부치는 사항

5.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3조(회의 및 의사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기금의 조성, 사업계획의 수립, 지원대상자 결정, 기금의
결산 등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
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. <개정 2018. 12. 14>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

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7. 9. 29>

제14조(간사)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 <개정 2014. 5. 2, 2017. 9. 29>

제15조(기금관리공무원)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 <개정 2017. 9. 29, 2018. 12. 14>

1. 기금운용관 : 농업기술센터 소장
2. 분임기금운용관 :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 및 농업인 육성업무 담당 부서의 장
3. 기금출납원 : 기금업무 담당 팀장

[전문개정 2014. 5. 2]

제16조(회계관리) ① 삭제 <2018. 12. 14>

②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적립기금에 편입한다.

제17조 삭제 <2018. 12. 14>

제18조 삭제 <2017. 9. 29>

제19조 삭제 <2018. 12. 14>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4. 5. 2]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6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용인시 4-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및 「용인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.

제3조(폐지기금의 운용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4-H후원회기금 및 용인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의 기존 운용자금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으로 통합하여 관리·운용한다.

부칙 <2007. 2. 23 조례 제86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7. 7. 1 조례 제884호, 행정기구 설치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내지 ⑥ 생략

⑦ 「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사회지도과장”을 “자원육성과장”으로, “기술지도과장”을 “기술지원과장”으로 각각 한다.

제15조 중 “사회지도과장”을 “자원육성과장”으로 한다.

⑧ 내지 ⑪ 생략

부칙 <2012. 12. 11 조례 제1264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. 1. 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를 인용한 조항은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.

별표 생략.

부칙 <2013. 5. 7 조례 제129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5. 2 조례 제137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9. 29 조례 제1709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용기금 범위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수립되는 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무원이 아닌

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 <2017. 10. 2 조례 제171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㉓ 까지 생략

㉔ 「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부시장”을 “제1부시장”으로 한다.

㉕ 부터 ㉗ 까지 생략

부칙 <2018. 12. 14 조례 제1887호>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11. 9 조례 제2079호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「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2조제1항”을 “「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제1항”으로 하고, “용인시 통합관리기금”을 “통합계정”으로 한다.

③ 부터 ⑨ 까지 생략

부칙 <2023. 11. 6 조례 제245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